[요약본]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

발행일 : 2026. 8. 20.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영

사법정책연구원은 2026. 8. 20.「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가능성과 한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요약본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에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하실 때는 본 요약본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그 목적에 다가감에 있어서 재판지연을 일소(一掃)하기 위한 특정한 제도나 절차를 곧바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에 앞서 재판지연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비로소 지연된 재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재판지연은 어느 하나의 절차나 제도의 결함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이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사법통계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본 보고서의 논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재판지연 문제를 개념적으로 해체하여 그 속에 신속성, 적정성, 경제성이라는 가치가 중층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조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이 재판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한 신속화법,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어떠한 범위와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 사례의 의미는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법통계의 수집과 분석, 전문가의 검토, 결과의 공표와 후속 점검을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제도화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범위 및 방법을 밝힘으로써 보고서 전체의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장은 재판지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통상적인 지연은 예정된 기준과 실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사건의 유형과 쟁점의 난이도, 당사자의 수와 소송수행 태도, 증거조사와 감정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심리기간이 달라진다. 더욱이 지연은 송달, 쟁점정리, 증거조사, 감정, 변론, 판결문 작성 등 재판의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재판지연 여부를 판단하거나 어느 하나의 절차를 개선하여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본 연구는 사법통계가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법통계는 사법에 관한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숫자와 자료의 형태로 축적하는 것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물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완전히 수치로 환원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사건 수와 처리기간,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 절차 단계별 소요기간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러한 가치의 실현 정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사법부는 오랫동안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를 발간하여 방대한 재판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다. 특히 사법연감은 약 50년에 걸쳐 법원의 조직과 인원, 예산, 사건 처리 현황 등 거의 모든 정보를 수치로 수록하여 온 대표적인 공식 자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법연감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형식과 내용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왕왕 제기된다. 사법연감이 단순한 통계의 나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능하여야 한다면, 이를 중심으로 한 사법통계 체계를 보다 세련(洗練)할 필요성이 크다.

적절한 사법통계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 연결된 두 차원에서 확인된다. 첫째, 법원은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법적 분쟁의 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는 단순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법이라는 분쟁해결 방식과 법의 지배에 대한 기능적 우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는 만큼, 한정된 자원 아래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강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재판지연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에서도 사법통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증가, 법관 증원의 제약, 법조일원화와 인사제도의 변화 등 조직적 · 사회적 요인이 존재하는 한편, 잦은 재판부 변경, 적시제출주의의 불준수, 변론과 공판의 집중 실패, 기일의 변경과 추후지정 등 재판 내부의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 여기에 의료 · 과학기술 · 환경 · 외교처럼 전문성이 높고 새로운 법리의 형성을 요구하는 사건과 정치적 · 사회적 갈등이 법원으로 유입되는 현상까지 고려하면, 재판지연을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사법제도와 정책의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규범해석과 더불어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과 같은 사회과학적 접근이 요청되며, 그 출발점이 정확하고 분석 가능한 사법통계라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과 이를 토대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운영하는 검증검토회, 그리고 검토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검증보고서를 포괄하여 '신속화법 체계'라 명명하고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빠르게 재판을 처리하는지를 직접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일본의 사법부가 자신이 놓인 제도적 · 사회적 여건 속에서 재판지연을 어떻게 관리 가능한 문제로 전환하고, 그에 필요한 사법통계와 검증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였는지에 방점이 놓인다. 이를 위하여 관련 입법자료와 검증검토회 회의록, 역대 검증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담당자와 검증검토회의 좌장, 일본 변호사연합회 관계자 및 국내 사법정보화실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제2장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

제2장은 재판지연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응의 시도들을 살펴본다. 이 장의 핵심은 재판지연을 단순한 기간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성과 적정성, 경제성이라는 가치가 서로 긴장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도 일정한 판결 또는 심판기간을 정한다. 그럼에도 우리 판례는 대체로 이러한 기간 규정을 강행적 기한이라기보다 직무상 준수를 요구하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 사건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할 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지만,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법률에 일정한 기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제수단이 곧바로 형성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신속한 재판'은 단순히 심리기간이 짧은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신속의 개념에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뿐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도 포함된다고 보고, 대법원 역시 적시처리가 요청되는 사건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쟁점을 집약하여 깊이 있게 심리하는 집중심리주의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신속한 재판이란 단순히 빨리 내려진 재판이 아니라,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판지연 문제의 가치내재적 특성이 드러난다. 재판 결과가 신속하게 내려져 분쟁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 당사자가 충실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경시할 수는 없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을 신속한 결론 도출만을 이유로 희생할 수 없다.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이 울부짖듯이, 기계적인 법률과 법원칙의 적용을 통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사건의 구체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오히려 판단에 앞서 숙고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일정한 '느림'은 구체적 사안에 부합하는 정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논의가 과도한 지연을 정당화하여서도 안 된다. 절차적으로 적정한 결과라 할지라도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재판은 단순히 빠른 재판이 아니라, 적정한 절차를 전제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연 없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기간 내에 종결되는 재판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지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전문적 관점뿐 아니라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합리적 기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관점이 외적 기준을 제공한다면, 법관의 전문적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요구되는 심리의 깊이와 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적 기준을 제공한다. 결국 재판지연은 사건의 복잡성에 비추어 통상 기대되는 범위를 넘어선 심리기간이 소요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국민의 기대와 법관의 전문적 판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한편 재판지연에 대한 대응방식 역시 하나의 척도로 쉽게 비교할 수 없다. 법관에게 처리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법률로 처리기간을 규정하는 방안, 법관과 지원인력을 늘리는 방안은 각각 신속성, 적정성, 사법권 독립과 행정비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면 신속성과 적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 결국 재판지연 문제는 적정성, 신속성, 경제성이 서로 긴장하고 충돌하는 삼각난제(trilemma)의 구조를 띤다.

이러한 난제는 특정 정책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핵심은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법원에 어떠한 사건이 유입되고, 어느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실제 효과를 보이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통계를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분석하고 정책에 환류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사법통계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민사 제1심 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4년 252.3일에서 2023

년 473.3일로 늘어났고, 2024년에도 437.3일을 기록하였다. 형사 불구속 제1심 합의사건 역시 같은 기간 장기화되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계속사건도 증가하였다. 다만 평균은 소수 장기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유형별 분포와 장기사건 비율, 절차별 소요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2022년 이루어진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에서도 대다수 응답자가 최근 재판지연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고, 지연은 경제적 손실, 사업체의 파산, 가사사건 당사자와 자녀의 고통 등 구체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도 법정기간 도과에 대한 보상, 지연 사유의 설명, 악의적인 절차 지연의 통제 등 여러 법안이 제시되었고,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 재판부 구성의 안정화, 감정절차 개선과 같은 사법행정상 대응도 추진되었다. 다만 어떠한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정책의 효과인지, 사건 구성이나 다른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분리하여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역설적으로도 이러한 사정은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사법통계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뒷받침한다.

제3장 재판지연 문제 대응을 위한 일본의 시도

제3장은 일본이 재판지연을 어떠한 배경에서 사법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화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일본의 접근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재판지연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의 수집 · 분석 · 공표와 후속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는 데 있다.

일본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대표적 판례는 타카다 사건이다. 약 15년 동안 공판이 중단된 이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개별 형사사건에서 구체적 권리로 기능할 수 있고, 현저한 지연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면소와 같은 비상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지연 여부는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연의 원인과 불가피성, 피고인의 이익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일본에서 재판지연 문제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

이후 일본 사회의 복잡화 · 다양화 · 국제화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가깝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의 핵심적 조건으로 재판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제시하였고, 민사소송 이용자조사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 재판기간의 예측가능성이 사법서비스 이용자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추진력이 더해지면서 민 · 형사 제1심 재판을 가능한 한 2년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2003년 신속화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률은 제1심 소송절차를 가능한 한 2년 이내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규정하지만, 이는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절대적 법정기한이라기보다 충실하고 적정한 절차를 전제로 한 정책목표와 노력의무에 가깝다. 아울러 국가는 법조인력과 시설, 절차와 제도 등 종합적인 기반을 정비하여야 하고, 최고재판소는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장기화 요인을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터 잡아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검증검토회가 설치되었다. 검증검토회에는 재판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와 통계 · 사회과학 전문가 등이 참

여하며, 각 사법 분야에서 작성된 통계자료와 현장 실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 장기화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기할 부분은 검증검토회가 기존 통계만을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 신속화에 필요한 자료가 현행 사건표에서 수집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통계항목의 추가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민사사건에서는 증인조사의 시작과 종료, 기일 횟수, 소장 보정명령 여부 등이, 형사사건에서는 공판 전 정리절차, 추가 기소, 증인 수와 피고인 질문 등에 관한 항목이 보완되었다. 즉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의식이 통계 수집 방식의 개선으로 다시 환류된 것이다.

나아가 검증보고서는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문제해결형인 동시에 추적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단순히 평균 심리기간과 사건 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수치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재판 장기화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고 잠정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동일한 문제를 후속 회차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항목을 보완한다. 또한 재판관과 변호사 등 다양한 관계자에 대한 실정조사를 통하여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고령화, 지역적 접근성, 잠재적 분쟁, ADR 등 사회적 요인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일본의 학계 및 재판실무계에서도 신속화법 체계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는 재판지연을 인상론이나 개별 경험에 맡기지 않고 장기적 검증의 대상으로 전환하였고, 통계와 실정조사를 결합하여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통계 수집에 환류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반면 2년이라는 목표가 충분한 실증적 근거보다 정치적 계기에 따라 채택되었고, 신속성이 충실성과 적정성을 압도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20년 이상 체계를 운영하였음에도 민사 제1심의 평균 심리기간이 현저히 단축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간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체계의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균 처리기간의 정체나 증가가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속화법 체계의 진정한 의의는 '2년'이라는 수치나 법률 자체보다, 재판지연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와 조직, 전문가 논의 및 공표 절차를 제도화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제4장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4장은 일본 사례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 사법통계의 담당 조직과 업무, 주요 산출물 및 활용상의 한계를 살펴본다. 무엇보다 우리 사법부가 발간하는 재판 관련 통계자료인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는 법원과 재판의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공식 자료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현행 체계에는 적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해당 자료들을 생산하는 사법정보화실 내 사법통계팀은 제한된 인력으로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의 작성 · 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생산, 법원 내외부의 각종 비정기적 자료 요청에 모두 대응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통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에도,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이 정해진 형식에 수치를 입력하고 검증하거나 개별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데 소요되므로 분석, 지표 개발, 정책평가와 같은

고차원적 업무에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 또한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가 상당 부분 동일한 기초자료를 사용하는 데도 데이터 추출과 가공, 검증과 편집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각 보고서의 형식과 기존 관행에 따라 유사한 작업이 반복되며, 상당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오류가 발견되면 담당자가 각급 법원이나 관련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고 다시 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한계는 사법통계의 활용에 있다. 사법연감은 방대한 수치와 통계를 수록하지만,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지표를 보아야 하는지, 수치가 변화한 원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를 분석하지 않는다. 즉 법원의 전반적 현황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크지만, 재판지연과 같은 구체적 정책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설계하는 데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의 축적과 공개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정보를 문제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환류시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데이터의 제공 방식 역시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황의 분석을 제약한다. 사법연감은 주로 PDF로 제공되고 일부 통계는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으나, 재판지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재분석할 수 있는 미가공 데이터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는 사법부 외부에서 독립적인 가설을 세워 공식 수치를 검증하거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안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의 분석을 법원 내부의 제한된 역량에만 의존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제5장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방안

제5장은 앞선 논의에 터 잡아 일본 신속화법 체계를 구성하는 신속화법, 검증검토회, 검증보고서를 우리나라에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것인지 검토한다. 이 장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를 가려내며, 그 결론은 법률의 제정보다 검증과 분석, 공표를 중심으로 한 기능의 선택적 수용이 타당하다는 데에 있다.

신속화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면 재판 신속화를 국가적 과제로 선언하고 사법부에 대한 인적 ·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이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책무를 다시 법률에 규정하면 중복적 · 상징적 입법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체적인 재판기간을 강제하면 사건의 특성에 따른 법관의 절차운영과 재량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법관과 지원인력, 조직적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만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별도의 신속화법을 도입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검증검토회는 대법원규칙이나 사법행정상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원행정처에 가칭 '재판 적정 · 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를 두고,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와 통계 전문가가 참여하되 필요에 따라 ADR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사법서비스 이용자의 관점도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무엇보다 검증검토회를 법원 외부에만 두면 재판의 특수성과 사법권 독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법원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하면 자기평가와 폐쇄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내부와 외부를 결합한 중간적 모델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국내형 검증검토회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그들의 초기 업무는 주요 통계지표의 변동 추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건유형과 절차상 병목의 식별, 잠정적인 정책권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조직과 인력만으로 모든 사건과 절차의 원인을 곧바로 심층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면, 실정조사와 사건유형별 분석, 정책효과의 추적 등으로 검증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증검토회의 도입과 운용에 뒤이어, 검증보고서 역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요소이다. 기실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실질적인 중심은 법률보다 검증검토회의 분석과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검증보고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재판지연의 현황과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자기점검과 정책평가의 수단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과 문제해결 의지의 표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방대하고 구체적인 독립적 검증보고서를 발간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검증보고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도입방식을 제안한다.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일단 기존에 발간하는 사법연감의 통계 관련 부분에 해당 연도의 핵심 수치와 최근 5년의 추이, 장기사건 비율과 단계별 병목 등의 주요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나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후, 그 다음에는 사법연감 안에 가칭 '재판 신속화에 관한 검증'이라는 독립된 챕터를 마련하여 주요 지표와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조직과 인력, 데이터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진 후에는 사법연감과 분리된 독립 검증보고서를 격년으로 발간하여 사건유형별 처리기간, 장기미제 원인과 정책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통계 업무의 중장기적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체 처리기간뿐 아니라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첫 기일부터 변론종결까지, 변론종결부터 판결선고까지의 기간을 구분하여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 작성 과정의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로부터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분석과 정책평가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사법통계팀의 비효율적인 업무 내용과 방식을 지적한 만큼, 비정기적인 통계자료 요청의 처리 경험도 담당자의 구전에만 맡기지 않고 처리기준과 자료 추출 방식, 의사결정 과정을 시스템에 축적하여야 한다. 이른바 경험의 지식화와 지식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질 때 사법통계 조직의 역량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본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자 시도하였다. 하나는 재판지연 문제를 개념적으로 해체하여 그 속에 신속성, 적정성, 경제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난제를 관리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첫 번째 논지에 따르면 재판지연은 단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 재판은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실한 심리와 적정절차를 희생할 수 없다. 여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라는 경제성의 제약이 더해지면서 재판지연은 하나의 삼각난제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특정 정책으로 일거에 해결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건과 사회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여야

할 과제가 된다. 그리고 그 관리의 중심에 사법통계가 자리한다.

두 번째 논지에 따르면 일본의 진정한 시사점은 신속화법 자체나 '2년'이라는 목표에 있지 않다. 일본은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를 통하여 재판지연의 실태와 원인을 장기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부족한 통계를 보완하고 정책의 효과를 후속 검증에서 다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비록 실제 처리기간의 단축 효과와 법률 제정의 경위에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사법부가 스스로를 검증하고 학습하기 위한 기반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일본 체계의 전면적 이식보다 기능의 선택적 수용을 제안한다. 별도의 신속화법 제정은 배제하되 검증검토회와 검증보고서를 도입하고, 초기에는 사법연감에 핵심적인 분석을 덧붙이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독립된 보고서 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의 비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균형적인 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의 함의는 재판지연이라는 특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이 새로운 기술과 전문사건의 증가, 사회적 갈등과 조직 변화 등 어려운 과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할 것인지에 관한 보다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그 핵심은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경험과 감각이 아닌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사법통계의 개선은 법원 내부의 행정 효율화뿐 아니라 외부의 학문적 연구와 비판, 새로운 정책대안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내부의 세부적인 지침과 업무분장, 검증보고서가 실제로 작성되는 구체적인 관행까지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국내 도입방안 역시 정책적 제안의 단계에 있으므로,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자료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통계지표의 설계, 위원회의 권한, 전문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분명하다. 재판지연은 일회적인 입법이나 특정 정책 하나로 일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연의 현황과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순환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신뢰할 수 있고 실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사법통계가 자리하여야 한다. 사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진단하고 학습하며 개선하는 구조를 갖출 때, 비로소 재판의 신속성과 적정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함께 제고하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